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4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10. 7.
제출자 : 달성군주



1. 제안이유

사문진피크닉장의 운영시간, 예약 및 환불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문진피크닉장의 운영시간을 09:00~18:00 → 10:00~18:00로 조정
(안 제9조)
- 나. 사문진피크닉장의 예약, 결제, 환불 시스템 개선(안 제10조, 안 제12조)
- 다. 사용자의 준수사항 신설(안 제15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- (2) 입법예고(2025. 10. 10. ~ 10. 30.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시설물 사용 예약은 사용자가”를 “사용자가”로, “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”을 “결제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사용자는 예약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물 사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계약 당사자 신분확인 후 사용 안내를 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예약 또는 계약 체결 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.

제14조 중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

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피크닉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사문진피크닉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(제9조 관련)

구분	피크닉장 평상		비고
사용시간	10:00 ~ 18:00		○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 (계절별 일몰시간 기상악화 화재예방 등)
사용료	소형평상 (3.3m × 4.6m)	대형평상 (4.0m × 6.0m)	○ 성수기·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
	15,000원	20,000원	
비고	① 피크닉장 사용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계절별 일몰시간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② 야간(일몰 후)에는 사용할 수 없다.		

[별표 2]

시설물 사용료 반환기준(제12조 관련)

구분	반환기준
1.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·결제 후 24시간 이내 취소: 사용료 전액 환급 ○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5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8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: 사용료 100% 공제
2.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료 전액 환불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~ ③ (생략) ④ 사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9조(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.</p>
<p>제10조(시설물의 사용예약) ① 시설물 사용예약은 사용자가 예약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 계좌에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입금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시설물 사용 예약순위는 신청순위에 따르되, 필요시 대외적으로 고지 후 추첨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0조(시설물의 사용예약) ① 사용자가 ----- ----- ----- -- <u>결제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</u> -----.</p> <p>② <u>사용자는 예약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물 사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계약 당사자 신분확인 후 사용 안내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예약 또는 계약 체결 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4조(준용)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 등을 준용한다.</p>	<p>제14조(준용) ----- ----- --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신 설></p>	<p>제15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피크닉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사문진피크닉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(제9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2 1603 774 2056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피크닉장 평상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용시간</td> <td colspan="2">09:00 ~ 18:00</td> <td>○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(계절별 일몰시간, 기상악화, 화재예방 등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사 용 료</td> <td>소형평상 (3.3m × 4.6m)</td> <td>대형평상 (4.0m × 6.0m)</td> <td rowspan="2">○성수기·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</td> </tr> <tr> <td>15,000원</td> <td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>비 고</td> <td colspan="3">①피크닉장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계절별 일몰시간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②야간(일몰 후)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피크닉장 평상		비 고	사용시간	09:00 ~ 18:00		○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(계절별 일몰시간, 기상악화, 화재예방 등)	사 용 료	소형평상 (3.3m × 4.6m)	대형평상 (4.0m × 6.0m)	○성수기·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	15,000원	20,000원	비 고	①피크닉장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계절별 일몰시간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②야간(일몰 후)에는 사용할 수 없다.			<p>[별표 1] 사문진피크닉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(제9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2 1610 1407 183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2">피크닉장 평상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용시간</td> <td colspan="2">1000 ~ 1800</td> <td>○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(계절별 일몰시간, 기상악화, 화재예방 등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사용료</td> <td>소형평상 (3.3m × 4.6m)</td> <td>대형평상 (4.0m × 6.0m)</td> <td rowspan="2">○성수가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</td> </tr> <tr> <td>15,000원</td> <td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>비고</td> <td colspan="3">① 피크닉장 사용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계절별 일몰시간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② 야간(일몰 후)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피크닉장 평상		비고	사용시간	1000 ~ 1800		○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(계절별 일몰시간, 기상악화, 화재예방 등)	사용료	소형평상 (3.3m × 4.6m)	대형평상 (4.0m × 6.0m)	○성수가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	15,000원	20,000원	비고	① 피크닉장 사용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계절별 일몰시간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② 야간(일몰 후)에는 사용할 수 없다.		
구 분	피크닉장 평상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시간	09:00 ~ 18:00		○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(계절별 일몰시간, 기상악화, 화재예방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 용 료	소형평상 (3.3m × 4.6m)	대형평상 (4.0m × 6.0m)	○성수기·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5,000원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고	①피크닉장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계절별 일몰시간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②야간(일몰 후)에는 사용할 수 없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피크닉장 평상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시간	1000 ~ 1800		○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(계절별 일몰시간, 기상악화, 화재예방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용료	소형평상 (3.3m × 4.6m)	대형평상 (4.0m × 6.0m)	○성수가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5,000원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고	① 피크닉장 사용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 계절별 일몰시간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② 야간(일몰 후)에는 사용할 수 없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
<p>[별표 2]</p> <p>시설물 사용료 반환기준(제1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 환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○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○ 사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○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 : 사용료의 50퍼센트 환불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○ 사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○ 사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○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</td> <td>○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반 환 기 준	1.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○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○ 사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○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 : 사용료의 50퍼센트 환불 	2.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○ 사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○ 사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○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	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	○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	<p>[별표 2]</p> <p>시설물 사용료 반환기준(제1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반환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결제 후 24시간 이내 취소: 사용료 전액 환급 ○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5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8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: 사용료 100% 공제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</td> <td>○ 사용료 전액 환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반환기준	1.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결제 후 24시간 이내 취소: 사용료 전액 환급 ○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5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8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: 사용료 100% 공제 	2.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	○ 사용료 전액 환급
구 분	반 환 기 준														
1.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○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○ 사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○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 : 사용료의 50퍼센트 환불 														
2.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○ 사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○ 사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○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														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	○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														
구분	반환기준														
1.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 또는 입금결제 후 24시간 이내 취소: 사용료 전액 환급 ○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5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: 사용료의 80% 공제 후 환급 ○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: 사용료 100% 공제 														
2.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	○ 사용료 전액 환급													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